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급여 지급 제한 사유 추가〉

-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69호)
-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21호)
-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80호)
-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38호)
-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53호)
-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49호)
-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31호)
-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98호)
-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53호)
-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26호)
-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66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9  |
| 1. 전역 후에 내란의 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한 급여 지급 제한 ..... | 9  |
| 2. 군 복무 중에 살인의 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제한 ..  | 26 |
| ※참고자료 .....                               | 31 |

## I. 제안경위

| 구 분    | 발 의 자       | 발의연월일        | 회부연월일        |
|--------|-------------|--------------|--------------|
| 추미애의원안 | 추미애의원 등 15인 | 2025. 1. 16. | 2025. 1. 17. |
| 서영교의원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5. 1. 17. | 2025. 1. 20. |
| 김영환의원안 | 김영환의원 등 10인 | 2025. 1. 23. | 2025. 1. 24. |
| 박상혁의원안 | 박상혁의원 등 10인 | 2025. 1. 24. | 2025. 1. 31. |
| 강득구의원안 | 강득구의원 등 11인 | 2025. 1. 31. | 2025. 2. 3.  |
| 문금주의원안 | 문금주의원 등 12인 | 2025. 2. 13. | 2025. 2. 14. |
| 김영배의원안 | 김영배의원 등 11인 | 2025. 2. 18. | 2025. 2. 19. |
| 백혜련의원안 | 백혜련의원 등 10인 | 2025. 3. 17. | 2025. 3. 18. |
| 강대식의원안 | 강대식의원 등 10인 | 2025. 3. 18. | 2025. 3. 19. |
| 조경태의원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 2025. 3. 25. | 2025. 3. 26. |
| 백선희의원안 | 백선희의원 등 11인 | 2025. 5. 21. | 2025. 5. 22.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추미애의원안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역 후 군 복무 중의 지위를 이용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됨.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임.

이에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 2. 서영교의원안

현행법은 군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역 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서에도 어긋남.

이에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 3. 김영환의원안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군인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을 신청했음. 현역 군인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38조제4항 등).

#### 4. 박상혁의원안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벌과 관련된 급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군인으로 복무하였던 경력 등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범죄의 발생이 복무 중의 사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벌 등에 의하여 급여가 제한되는 사유에 공무원이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등).

## 5. 장득구의원안

현재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가 상당 기간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이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음.

이에 연금 대상자가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내란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지급 받은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공헌에 따른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등).

## 6. 문금주의원안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복무 중 국방·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후 국방

· 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내란의 죄·외환의 죄, 반란의 죄·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이 퇴직 이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군인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제6항).

## 7. 김영배의원안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복무 중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행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여 제한의 요건 중 “복무 중의 사유”를 삭제하여 군인이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제5항).

## 8. 백혜련의원안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이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복무 중의 사유뿐만이 아닌 퇴직 후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중대범죄로 인한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 9. 강대식의원안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제적을 당하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 10. 조경태의원안

현행법은 내란·외환의 죄,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

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 11. 백선회의원안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역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성실한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연장된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및 제52조제5항).

### Ⅲ. 검토의견

#### 1. 전역 후에 내란의 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한 급여 지급 제한<sup>1)</sup>

□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군 복무 중의 사유 뿐만 아니라 전역 후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利敵)의 죄] 등의 중대범죄(이하,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군인연금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등)

또한, 6건의 개정안들은<sup>2)</sup> 공통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반환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단서 등).

---

1) 추미애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영환의원안, 박상혁의원안, 강득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김영배의원안, 백혜련의원안, 백선희의원안

2) 서영교의원안·김영배의원안·백혜련의원안·문금주의원안·강득구의원안·백선희의원안이 해당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 개정사항 요약]

| 개정 사항  |                                                                                | 해당 개정안                                                                                                                                                                                                                                                                                                                                                                           |
|--------|--------------------------------------------------------------------------------|----------------------------------------------------------------------------------------------------------------------------------------------------------------------------------------------------------------------------------------------------------------------------------------------------------------------------------------------------------------------------------|
| 공<br>통 | 1. 전역 후의 사유로 내란의 죄 등의 중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급여지급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역 후의 사유도 추가(공통사항)</li> <li>- 박상혁의원안은 전역 후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에 한정</li> <li>- 강득구의원안은 내란의 죄 등의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에 따른 죄 등을 지은 경우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li> </ul>                                                              |
|        | 1-1. 이미 받은 퇴직급여의 반환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배의원안·백혜련의원안·문금주의원안 (퇴직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중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서 지급받은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여금에 「민법」 제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li> <li>○ 서영교의원안(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급한 퇴직 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와 퇴직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li> <li>○ 강득구의원안(이미 지급받은 급여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 환수)</li> <li>○ 백선희의원안(이미 지급한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함)</li> </ul> |
| 개<br>별 | 2. 군인이었던 사람이 중대범죄 행위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형사기소된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의 정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배의원안</li> <li>○ 문금주의원안</li> <li>○ 박상혁의원안(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li> </ul>                                                                                                                                                                                                                                                                 |
|        | 3. 복무 중 또는 공무원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                    | ○ 박상혁의원안                                                                                                                                                                                                                                                                                                                                                                         |
|        | 4. 기여금과 환수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5년→10년)                                              | ○ 백선희의원안                                                                                                                                                                                                                                                                                                                                                                         |

개정안별로 개별적인 규정사항으로, 박상혁의원안은 군 전역자 중에서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등의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sup>3)</sup>

서영교의원안은 내란의 죄 등의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급한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sup>4)</sup>와 퇴직 수당까지 전액 반환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sup>5)</sup>

이에 더하여 강득구의원안은 내란의 죄 등의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등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아동·

---

3) 그 밖에 박상혁의원안은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도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를 추가하여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토록 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법 제7조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마.(생략)

3. 퇴직수당

5)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토록 하고 있음. 또한, 강득구의원안은 “부칙 제2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당시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

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등을 지은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sup>6)</sup>

또한, 강득구의원안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받은 급여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토록 하려는 것임.<sup>7)</sup>

문금주의원안·김영배의원안은 공통사항에 더하여 군인이 퇴직 후에 범한 내란의 죄 등의 중대범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sup>8)</sup>

백선희의원안은 공통사항에 더하여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하려는 것으로, 기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환수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6)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7)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함.

8)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

[신·구조문대비표 1]

[illegible]

|                                                                                                                  |                                                                                                                                                                                |                                                                                                  |                                                                                                                                                                                                                                                                                                                                                                                    |
|------------------------------------------------------------------------------------------------------------------|--------------------------------------------------------------------------------------------------------------------------------------------------------------------------------|--------------------------------------------------------------------------------------------------|------------------------------------------------------------------------------------------------------------------------------------------------------------------------------------------------------------------------------------------------------------------------------------------------------------------------------------------------------------------------------------|
|                                                                                                                  | <p><u>정되었음에도</u><br/><u>급여를 받은 사</u><br/><u>실이 있는 경우</u><br/><u>에는, 급여액에</u><br/><u>대통령령으로</u><br/><u>정하는 이자 및</u><br/><u>환수비용을 가</u><br/><u>산하여 징수하</u><br/><u>여야 한다.</u></p> | <p><u>다른 이자를 가</u><br/><u>산한 금액을 반</u><br/><u>환하고, 급여는</u><br/><u>지급하지 아니</u><br/><u>한다.</u></p> | <p><u>다른 범죄행위</u><br/><u>로 인하여 수사</u><br/><u>가 진행 중이거나</u><br/><u>형사재판이</u><br/><u>계속 중일 때에</u><br/><u>는 대통령령으</u><br/><u>로 정하는 바에</u><br/><u>따라 퇴직급여</u><br/><u>및 퇴직수당의</u><br/><u>지급을 정지한</u><br/><u>다. 이 경우 급</u><br/><u>여의 제한 사유</u><br/><u>에 해당하지 아</u><br/><u>니하게 되었을</u><br/><u>때에는 그 잔여</u><br/><u>금에 대통령령</u><br/><u>으로 정하는 이</u><br/><u>자를 가산하여</u><br/><u>지급한다.</u></p> |
| 제52조(시효)                                                                                                         | 제52조(시효)                                                                                                                                                                       |                                                                                                  |                                                                                                                                                                                                                                                                                                                                                                                    |
| ① ~ ④ (생략)                                                                                                       | ① ~ ④ (현행과 같음)                                                                                                                                                                 |                                                                                                  |                                                                                                                                                                                                                                                                                                                                                                                    |
| 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 방 부 장 관 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단서 신설> | <p><b>*백선회의원안</b></p> <p>⑤</p> <p>-----</p> <p>-----</p> <p>-----</p> <p>-----</p> <p>-----</p> <p>-</p> <p>-----</p> <p>-----</p> <p>다만, 제38조제4항의 경우 시효를 10년으로 한다.</p>        |                                                                                                  |                                                                                                                                                                                                                                                                                                                                                                                    |
| ⑥ ~ ⑧ (생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                                                                                                                                                                                                                                                                                                                                                                                    |

[신·구조문대비표 2]

| 현행                                                                                           | 강득구의원안                                                                                                                                                                                                                                           | 박상혁의원안<br>문금주의원안 |
|----------------------------------------------------------------------------------------------|--------------------------------------------------------------------------------------------------------------------------------------------------------------------------------------------------------------------------------------------------|------------------|
| 제16조(급여의 환수 등)<br>① (생략)<br><u>&lt;신설&gt;</u>                                                | 제16조(급여의 환수 등)<br>① (현행과 같음)<br>②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받은 급여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br>-----<br>-----<br>-----<br>-----<br>-----.                                                                                                                                                                             |                  |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 또는 이자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br>-----<br>-----<br>-----<br>-----<br>-----                                                                                                                                                                         |                  |

④ · ⑤ (생략)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퇴직  
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한다. 이 경우 퇴직급  
여액은 이미 낸 기여  
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를 가산한 금액 이하  
로 감액할 수 없다.

1. 복무 중의 사유(직  
무와 관련이 없는 과  
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  
다가 생긴 과실로 인  
한 사유는 제외한다)  
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 3. (생략)

② (생략)

③ 복무 중의 사유(직  
무와 관련이 없는 과  
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  
다가 생긴 과실로 인  
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

-----.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

1. ----- (직  
무와 관련이 없는 과  
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  
다가 생긴 과실로 인  
한 사유는 제외한다)  
또는 공무원 재직 중  
의 사유(군인으로 복  
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  
용한 경우에 한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직  
무와 관련이 없는 과  
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  
다가 생긴 과실로 인  
한 사유는 제외한다) 또는

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

공무원 재직 중의 사  
유(군인으로 복무한 경  
력 또는 직위 등을 실  
질적으로 이용한 경우  
에 한한다)-----

④ 복무 중의 사유 또는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삭 제>

(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 설>

제38조의2(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문금주의원안(제38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⑤ 군인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利敵)의 죄]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중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서 지급받은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⑥ 군인이었던 사람이 제5항에 따른 범죄행

|  |                                                                                                                                                                                                                                                                                                                                                                                                                                 |                                                                                                                                           |
|--|---------------------------------------------------------------------------------------------------------------------------------------------------------------------------------------------------------------------------------------------------------------------------------------------------------------------------------------------------------------------------------------------------------------------------------|-------------------------------------------------------------------------------------------------------------------------------------------|
|  | <p>사람<br/>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p> <p>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p> <p>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p> <p>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p> | <p>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p> |
|--|---------------------------------------------------------------------------------------------------------------------------------------------------------------------------------------------------------------------------------------------------------------------------------------------------------------------------------------------------------------------------------------------------------------------------------|-------------------------------------------------------------------------------------------------------------------------------------------|

|  |                                                                                                                                                                                                                                                                                                                                                                                                                                                                                                                                                                                                                                                                                                                                                                           |  |
|--|---------------------------------------------------------------------------------------------------------------------------------------------------------------------------------------------------------------------------------------------------------------------------------------------------------------------------------------------------------------------------------------------------------------------------------------------------------------------------------------------------------------------------------------------------------------------------------------------------------------------------------------------------------------------------------------------------------------------------------------------------------------------------|--|
|  | <p><u>한정한다)의 죄</u><br/> <u>마. 「아동·청소년</u><br/> <u>의 성보호에 관</u><br/> <u>한 법률」 제7조,</u><br/> <u>제8조 및 제11조</u><br/> <u>부터 제16조까지</u><br/> <u>의 규정에 따른</u><br/> <u>죄</u><br/> <u>바. 「군사기밀 보호</u><br/> <u>법」 제11조, 제1</u><br/> <u>1조의2, 제12조,</u><br/> <u>제13조, 제13조의</u><br/> <u>2 및 제15조의</u><br/> <u>죄</u><br/> <u>사. 「전기통신사업</u><br/> <u>법」 제95조의2</u><br/> <u>제1호의2 및 제1</u><br/> <u>호의3의 죄</u></p> <p>② <u>국방부장관은 제1항</u><br/> <u>에 따라 이 법의 적용</u><br/> <u>대상에서 제외하려는</u><br/> <u>경우에는 적용 대상자</u><br/> <u>의 범죄경력자료 또는</u><br/> <u>교정시설 수용 정보를</u><br/> <u>관계 기관의 장에게</u><br/> <u>요청할 수 있다.</u></p> <p>③ <u>제2항에 따라 범죄</u><br/> <u>경력자료 또는 교정시</u><br/> <u>설 수용 정보를 요청</u><br/> <u>받은 관계 기관의 장</u><br/> <u>은 정당한 사유가 없</u><br/> <u>으면 그 요청에 따라</u><br/> <u>야 한다.</u></p> |  |
|--|---------------------------------------------------------------------------------------------------------------------------------------------------------------------------------------------------------------------------------------------------------------------------------------------------------------------------------------------------------------------------------------------------------------------------------------------------------------------------------------------------------------------------------------------------------------------------------------------------------------------------------------------------------------------------------------------------------------------------------------------------------------------------|--|

□ 현행법 제38조제4항은 군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역 후에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역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에게 급여를 계속해서 지급하여야 함.

□ 군인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sup>9)</sup> 또한, 군인연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써 피보험자(군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군인근무관계의 기능유지도 함께 도모하고 있음.<sup>10)</sup>

이에 대하여 군인연금이 군 복무기간 동안 국가에 헌신한 군인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나,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연

9)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4헌바232

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들은 군인이 전역 후에도 내란의 죄 등의 중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군인연금 급여의 지급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부터의 제한을 통하여 군인이 전역 후에도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공헌에 따른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제4항의 개정언해를 살펴보면, 동 규정은 1994년 7월 1일 시행 군인연금법 일부개정<sup>11)</sup> 시 군 복무 중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내란의 죄 등의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제3항으로 신설되었음.

동 규정과 동일한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원 심판(2000 헌바57 결정, 2002. 7. 18.)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3항의 급여제한을 퇴직후의 사유에도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있음에 따라,<sup>12)13)</sup> 국방위원회에

---

11) 법률 제4705호

12) 참고자료 1 참조.

13) 이를 개정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됨(2009. 9. 24).

서 군인연금법 제33조의 “형벌등에 의한 급여제한” 사유를 “복무중인 사유”로 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심사하여 의결(2009. 11. 27.)하였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 개정 연혁]

| 법률 제4705호 1994년 7월 1일 시행<br>군인연금법 일부개정                                                                                                                          | 법률 제9904호 2010년 1월 1일 시행<br>군인연금법 일부개정                                                                                                                                                                                           |
|-----------------------------------------------------------------------------------------------------------------------------------------------------------------|----------------------------------------------------------------------------------------------------------------------------------------------------------------------------------------------------------------------------------|
| 제33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제한) ① (생략)<br>② 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3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제한) ① ~ ② (생략)<br>③ <u>복무중의 사유로</u> 「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이미 유사 사례에서 위헌판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전역한 군인 등을 대상으로 국헌문란 등에 가담하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및 관계 개정규정의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일부 개정안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이미 받은 퇴직 급여의 반환규정 신설과 ②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중대범죄행위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형사기소된 때) 퇴직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의 정지와 ③ 복무 중 또는 공무원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법익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동일한 개정취지의 다수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 개정안들에 대한 심사경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sup>14)</sup>

특히, 백선희의원안은 내란의 죄 등으로 기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환수 소멸시효를 기존 5년보다 연장된 10년으로 규정하려는

---

14)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613,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71,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851,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81,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2207614,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2208151,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2210565 등임.

동법 개정안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므로, 환수 소멸시효를 5년 더 추가 연장함으로써 내란의 죄 등을 저지른 군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기지급한 급여에 대한 환수하도록 입법하는 경우에는, 두 법의 환수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임.

## 2. 군 복무 중에 살인의 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제한

□ 강대식의원안·조경태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군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4장(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군인연금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추가적으로, 강대식의원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sup>15)</sup>를 범한 사람에게도 군인연금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의2(예비, 음모),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부터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까지,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부터 제15조(알선영업 행위 등)까지 및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까지,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들은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특히, 「형법」상 살인의 죄는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이러한 범죄에는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sup>16)</sup>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살인, 아동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이미 유사 사례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헌법재판소가 「군인연금법」 위헌제청

---

16) 헌법재판소 2008헌가23, 2010. 2. 25.

(2008헌가1, 2009헌바21(병합))<sup>17)</sup> 등에서 직무 관련 범죄 여부, 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 등을 묻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급여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과거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개정안들의 개정 대상인 동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제4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법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제1항(현행법 제38조제1항에 해당)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 감액 지급 규정<sup>18)</sup>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sup>19)</sup> 등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제38조제4항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제38조제4항과 관련된 국회의 입법권을 기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17) 참고자료 2. 참조

18) 해당 결정 이후 구)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현행법 제38조제1항)의 연금의 감액 대상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개정(’10년)하였음.

현행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하 항 생략)

19)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군인의 군 복무 중에 살인의 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급여지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또는 직무 관련성·고의성·극악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급여지급을 제한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04 |

※ 참고자료 1.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3항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위헌소원 심판(2000 헌바 57 결정, 2002. 7. 18.)

(사건 개요) 국립대 교수였던 청구인이 퇴직한 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수차례 회합하여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 통신) 위반죄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됨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3항에 따라 기지급된 퇴직급여에 대한 환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공무원연금법」 제64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함

【판시사항】 1.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의 급여제한을 퇴직후의 사유에도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을 퇴직후의 사유에도 적용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을 퇴직후의 사유에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4.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위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범한 죄로 한정하여 보는 한,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입법에 있어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급여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급여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을 결하고,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피해를 주어 법익균형성을 잃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급여청구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앞의 제1항, 제2항에서 “재직 중의 사유로”라고 그 사유의 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 사유가 ‘재직 중의 사유’만인지 ‘퇴직 후의 사유’도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이 해당 범죄의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범문상의 표현은 입법의 결함이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대립적 해석을 낳고 있는바,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의 사유’를 급여제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로 본다면, 이는 법규정이 불명확하여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라 하겠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하여 보는 입장을 취할 경우, 공무원 재직 중에 일반범죄를 범한 자와 재직 중 반국가적 범죄를 범한 자 사이에는 제한되는 급여의 범위에 차등이 있으나, 이러한 차별은 공무원이 재직 중 반국가적 범죄를 범할 경우 국가에 대한 위해가 일반범죄의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을 퇴직 후의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 큰 차별이 있게 된다. 퇴직 후 일반범죄를 저지른 자는 퇴직급여청구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는 퇴직한 후 시일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에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박탈당하게 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어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제한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급여제한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수급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84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급여의 제한조치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급여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② 생략 ③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 참고자료 2.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 위헌제청  
등 (2008헌가1, 2009헌바21(병합))

(사건 개요) 군인이었던 제청 신청인 및 청구인이 복무 중 처 등에 대한 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연금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자,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함

\* 「군인연금법」 ('95.12.29. 법률 제5063호)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결정 요지)

1.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음으로써 기본적 췌값을 받은 군인에게 다시 제적이란 군인의 신분 상실의 치명적인 법익 박탈을 가하고 이로부터 더 나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이 직무 관련 범죄 여부, 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군인범죄를 예방하고 군인이 복무 중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고,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심히 부당하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존속케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생략)...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